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고영옥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고영옥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97
----------	-----

발의연월일 : 2024년 11월 6일

발의자 : 경수현, 고영옥, 김경이, 김육영,
소형준, 이용진,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해숙

1. 제안이유

성북구 어르신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와 적용대상 및 수강료에 관한 규정(안 제3조, 제4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5조, 제6조)

라. 사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안 제7조,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사전협의 : 홍보전산과

라. 입법예고 : 2024. 11. 8. ~ 2024. 11.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어르신에 대한 생활디지털 교육을 지원하여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성북구민을 말한다.
2. “생활디지털”이란 개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역상권”이란 관내 금융기관, 음식점, 식음료 판매점 등 생활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4. “현장체험학습”이란 지역상권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생활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체험하는 학습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북구 어르신의 생활디지털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 지원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및 수강료) 이 조례에 따른 적용대상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수강 신청자로 하며,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

기 위하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교육의 지원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교육을 위한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교육의 홍보에 관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서 신청하는 교육
2. 정보화교육 및 현장체험학습
3. 인터넷뱅킹 이용 및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에 따라 연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교육지원을 위하여 지역상권 및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